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용대

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O 지역예비군 편성조직에 없는 이·면대장에 대한 수수료 면제근거를
 삭제하고, 시지역의 통장은 수수료 면제대상에 추가하며,
- O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감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
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,
-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예 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국가보훈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·등록하는 제증명 등 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이 지역예비군 이·면대장이 열람하는 수수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, 시지역 통장이 열람하는 수수료는 면제대상에 추가 (안 제5조제 1항제3호)
-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면제규정 삭제 (안 제5조제1항제4호)
- O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 (안 제5조제1 항제4호)

4. 검토의견

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면제대상의 형평성 제고와 상위법률과의 일치 및 국가유공자 에 대한 예우적 차원에서 면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으로는

- 면제대상의 변경(안 제5조제1항제3호)
 - 이·면대장에 대한 면제대상 삭제
 - 통장에 대한 면제대상 추가
-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면제규정 삭제(안 제5조제1항제4호)
-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(안 제5조제 1항제4호)하는 것임.

금번 개정 조례는 면제대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군 이·면 대장에 대한 면제규정 삭제 및 통장의 면제규정 신설, 상위법과의 일 치를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면제규정 삭제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로써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 :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